

#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마포주민편익시설은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'19.12.29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2009년 부터 위탁 운영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추진근거
   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  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 - 필요성
    -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법인을 통한 운영 필요

#### 다. 위탁 사무내용

-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업무
- 마포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운영·관리
-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, 수선 등 유지관리 업무

#### 라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마포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 :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(상암동 17-2)
- 시설규모 : 지하2층/지상4층, 별관 1동
- 연면적 : 4,754m<sup>2</sup>
- 주요시설 : 어린이집, 독서실, 헬스장, 실내골프, 목욕탕 등
- 준공일자 : 2009. 12.
- 이용대상 :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

#### 마. 위탁기간 : 3년('19.12.30. ~ '22.12.29.)

##### ※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'09.12.30.~'12.12.29. (3년, 마포구시설관리공단)
- 2차 : '12.12.30.~'15.12.29. (3년, 마포구시설관리공단)
- 3차 : '15.12.30.~'18.12.29. (3년, 마포구시설관리공단)
- 4차 : '18.12.30.~'19.12.29. (1년, 마포구시설관리공단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#### 사. 소요예산 : 운영비 지원 없음(수익창출형으로 수익금으로 운영)

#### 아. 기대효과

- 전문법인의 운영·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마포주민편익시설	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없음